

『2016년 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』

(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·증축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2월 21일

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제안이유

- 송정동 주민센터는 35년이 경과한 노후건축물로 신축이 필요하며,
- 도량동 주민센터는 인구증가, 복지수요 급증 등으로 주민복지시설, 회의실 등을 증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□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

- 위 치 : 송정동 72번지 외 1필지
- 대 상 : 건물 지하1층, 지상4층 / 연면적 2,740m²
- 기준가격 : 58억원

□ 도량동 주민센터 증축

- 위 치 : 도량동 792-254번지 외 5필지
- 대 상 : 건물 지상3층 / 연면적 800㎡(기존 534.01㎡)
- 기준가격 : 18억원

라. 참고사항

○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동법 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노후화된 송정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,
- 인구증가, 복지수요 급증 등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도량동 주민센터를 증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송정동 72번지 외 1필지에 지하1층, 지상4층, 연면적 2,740㎡로 송정동 주민센터를 58억원(기준가격)으로 신축하고,
- 도량동 792-254번지 외 5필지에 지상3층, 연면적 800㎡로 도량동 주민센터를 18억원(기준가격)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본 관리계획안은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건물 노후화 및 인구증가, 복지수요 급증으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

하고자 주민센터의 신·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에 58억원, 도량동 주민센터 증축에 18억원이 투입되는 등 공유재산 취득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